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적극 활용해야

차례

차례	2
요약	3
I. 미래창조과학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4
II.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10
III.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제시	15

- 본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작성됐음.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I. 미래창조과학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 미래창조과학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예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6년 5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2015년 7월 23일 같은 유사한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¹

그런데 미래부는 19대 국회가 종료할 즈음인 2016년 5월 23일 다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20대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다시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안 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1)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안 제28조제3항)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32조제5항, 제96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3)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안 제34조제2항·제3항, 안 제34조제4항부터

1 2015.09.0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5j4l5A>

제6항까지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쟁상황평가 외에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 시장구조, 이용자의 서비스 공급자 전환 용이성 및 요금·서비스 품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업의 검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업의 검업) ①	제17조(사업의 검업) ①	제17조(사업의 검업) ①	제17조(사업의 검업) ①
1. 통신기기제조업	1. 통신기기제조업	1. 통신기기제조업	1. 통신기기제조업	1. 통신기기제조업
2. 3. (생략)	2. 3. (생략)	2. 3. (생략)	2. 3. (생략)	2. 3.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①
1. ~ 4의2. (생략)	1. ~ 4의2. (생략)	1. ~ 4의2. (생략)	1. ~ 4의2. (생략)	1. ~ 4의2. (생략)
5.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6. (생략)	6. (생략)	6. (생략)	6. (생략)	6. (생략)
②·③ (생략)	②·③ (생략)	②·③ (생략)	②·③ (생략)	②·③ (생략)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 ③ (생략)

④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 신고하려는.....
.....
.....
.....
.....
.....

⑤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
.....
.....
.....
.....
.....
.....

⑤ 제4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⑤ (생 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경쟁의 촉진) ① (생 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6항.....
.....
.....

제34조(경쟁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쟁상황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일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단위시장으로 확정(劃定)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경쟁상황평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시장 내 진입 장벽 등 전기통신사업의 시장구조
2.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 여부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여부
4. 요금·품질의 수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경쟁상황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신 설>

③ ~ ⑧ (생 략)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생 략)

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생 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 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 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39조(상호접속)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42조(정보의 제공) ①·② (생 략)

3.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

4. 설비등의 보유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하여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상호접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

제42조(정보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 ~ ⑥ (생 략)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7. (생 략) ② ③ (생 략)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9.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10. ~ 12. (생 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생 략)	③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금지행위) ① 1. ~ 4. (현행과 같음) 5.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6. 7.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1. ~ 8. (현행과 같음) 9. 제32조제4항 본문.....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 ~ 12.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현행과 같음)
---	---

이하에서는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28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17조)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을 제시한다.

II.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1.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1) 요금인가제 유지의 필요성

- 요금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요금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기존의 통신요금인가제를 유지하더라도 통신사의 요금인하를 통한 자율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신상품 출시가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표 1 참조> 3G 데이터 무제한, 유무선 결합, 망내음성 무제한, 선택형 요금제, 데이터 중심요금제 유무선 음성통화 무제한 등 주요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다.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SK텔레콤의 신상품 출시가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표 1> 통신 3사의 요금제 도입 시기 현황

구분		3G데이터 무제한	유무선 결합	망내음성 무제한	선택형 요금제	데이터 요금제 유무선 음성 통화 무제한
도 입 시 기	SKT	2010.8.26	2010.9.15	2013.3.27	2013.5.22	2015.5.20
	KT	2010.9.10	2011.5.2	2013.4.1	2014.2.28	2015.6.1
	LGU+	2010.10.1	2011.9.19	2013.4.11	2014.1.27	2015.5.29

기존의 요금인가제 조항을 보더라도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개념의 통신요금제 출시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제 폐지는 입법예고 제안 이유로 꼽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관련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실²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14년 10월 13일까지 인가제 적용 기업인 SK텔레콤은 인가 신청에 단 한 번도 수정요구 받거나 반려 받은 적 없이 미래부로부터 100%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실질적으로 통신요금 인가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가제에 대하여 규제 당국 관계자는 요금인가제에 대하여 “요금인가는 사업자가 가져오는 서류에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일일 뿐”이라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³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한 바 없이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원가 공개 소송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원가심 의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함께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14.02.06.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방통위는 이용약관의 인가에 있어 서비스상품의 개별 원가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기존요금 및 경쟁사의 유사 요금제와의 요금수준 비교 등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총괄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이용약관의 인가시 해당 서비스별 요금에 관한 공급비용 등을 제대로 심의, 평가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2 2014.10.13. 심학봉 의원실 보도자료.

3 2014.02.22.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2109941>

4 2014.02.06.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해야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원가 공개 소송⁵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 내지 공익이 현저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의 행사 및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의 행사를 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주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2015.01.15. <통신비 인하 이슈리포트>에서 통신사 관계자와 통신당국 공무원만 참여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는 요금 인가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요금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참여 보장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2015.02.1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통해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을 청원했다.

참여연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

제28조의3(이용약관심의위원회) <신설>

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통신요금 등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4호의 위원이 전체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기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대학에서 전기공학·전자공학·정보통신학·회계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정책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4.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③이용약관심의위원회는 8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청원안의 취지는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통신당국을 비판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를 운영하여,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5 2014.02.06. 서울고등법원 2012누3131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에 의하여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의지가 있었다면 통신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적극적인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렴한 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통신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 통신요금인가제를 부실하게 운영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 폐지하여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도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청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통신요금 인가제를 확대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보장과 실질적인 요금인하 압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한다.

2) 신고보완 및 반려제의 불합리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28조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 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록, 입법예고안에서 새로이 신고 보완 및 반려제를 두어 일정한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려를 할 수 있고 이마저도 미래창조과학부가 15일 내에 반려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약관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신고된 약관에 대하여 반려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현행 인가제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미래창조과학부가 15일내에 반려를 하여야만 하는 데 그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

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 및 반려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약관의 인가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의 원가요소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통신요금이 산정되었는지를 감안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를 삭제했다.

통신은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서비스이다. 특히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 내지 공익이 현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고제 전환 입법예고는 이동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인가제 하에서 보호되던 이용자의 이익을 방기한 채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 1조에서 법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의 공공성 강화 목적을 달성하려면 통신요금의 공공성 통제가 필수적이다. 그 공공성 통제의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3) 소결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인가제를 폐지하려고 하나 그간 인가제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반면에 그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부작용은 신고 보완 및 반려제를 도입하여 막을 수 있다고 하나 보완 및 반려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첨부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반려를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각 7일(보완)과 15일(반려)내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보완 및 반려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향후 통신사들의 약관은 사실상 신고만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어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예방적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III.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제시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

과거 SK텔레콤은 자회사 SK텔레텍을 통해서 SK텔레콤 전용 단말기 SKY 제품을 생산하였고, KT는 자회사 K테크를 통해서 KT 전용 단말기 EVER 제품을 생산한 바 있다.

SKY 제품은 SK텔레콤이 신세기 통신과 합병(2002년)하면서 당시 정보통신부로부터 SK텔레콤 공급물량을 연간 120만대로 제한 받았다. SK텔레콤과 SK텔레텍은 정보통신부에게 지속적으로 연간 공급물량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우려하여 정보통신부는 불허했다. 그러다 2005년 팬택이 단말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SK텔레텍을 인수했다. 반면에 EVER 제품의 판매량이 저조하여 KT는 2012년 휴대폰 제조 사업을 철수했다.

SK텔레콤의 SKY 제품은 판매가 원활하였지만 정부의 제재로 인하여 팬택에 매각한 것이고, KT의 EVER 제품은 판매가 저조하여 청산된 것이다.

SK텔레콤의 시장 지배율은 과거에 비하여 큰 변동 없이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KT의 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하여 29%에 못 미치고 있고, LGU+의 시장 점유율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제조를 허용한다면 SK텔레콤 전용 단말기는 판매가 원활할 것이지만 KT나 LGU+ 전용 단말기는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SK텔레콤 단말기 출시를 독점 단말기를 통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여 통신사의 경쟁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2012.12	2013.12	2014.12	2015.06
SK텔레콤	50.3	50.0	50.0	49.9
KT	30.8	30.1	30.3	28.9
LGU+	18.9	19.9	19.7	21.2

출처 : 무선통신가입자통계, 미래창조과학부

주 1) MVNO, WiBro 제외

단위 : %

- 이미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음

게다가 현재에도 단말기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통신사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표3 참조>

<표 3> 통신사 전용 단말기 현황

모델명	갤럭시J7 2016에디션	썬(sol)	Y6
통신사	KT	SK텔레콤	LGu+
제조사	삼성전자	TCT Mobile	화웨이
출시일	2016.04.29	2016.01.22	2015.12.15
출고가	363,000원	349,800원	99,000원
모델명	루나(luna)	LG젠들	갤럭시A8
통신사	SK텔레콤	LGu+	SK텔레콤
제조사	TG엔컴퍼니, 팍스콘	LG전자	삼성전자
출시일	2015.09.22.	2015.7.29	2015.7.24
출고가	378,400원	242,000원	399,300
모델명	밴드플레이	G스타일로	T키즈폰 준2
통신사	SK텔레콤	KT	SK텔레콤
제조사	LG전자	LG전자	인포마크
출시일	2015.6.25.	2015.4.23	2015.4.6
출고가	297,000원	297,000원	205,700
모델명	아이스크림		
통신사	LGu+		
제조사	LG전자		
출시일	2015.1.27		
출고가	286,000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업 허용은 SKT의 이동통신 독과점을 악화시킬 것이고 또 이미 제조사의 이미 출시한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충분하므로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정책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6. 6. 2.

발행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담당 심현덕 간사 02-723-5303 min@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